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8.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현행 : 10명 이상 20명 이내
- 개정 : 15명 이상 25명 이내

나.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에 국가정보원 대구지부 구미담당관을 당
연직 위원으로 추가(안 별표)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10명 이상 20명 이내”를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선정기준표(제3조제2항 관련)

1. 구미시의회의장
2. 구미경찰서장
3.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
4. 제5837부대 1대대장
5. 국가정보원 대구지부 구미담당관
6. 구미세무서장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미시협의회장
8. 구미상공회의소 회장
9. 구미소방서장
10. 농협중앙회 구미시지부장
11. KT대구고객본부 구미지사장
12. 한국전력공사 구미지사장
13. 구미시 재향군인회장
14. 국군 제202 기무부대 구미담당관
15. 구미시 새마을회장
16. 구미시 여성단체협의회장
17.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협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 을 포함한 <u>10명 이상 20명 이내</u>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구미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 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② ~ ⑤ (생 략)	제3조(협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 <u>15명 이상 25명 이내</u> ----- ----- ----- -----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통합방위법」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 시·도 협의회와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도 협의회에 한한다.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중사태 및 병중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시·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국군 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
5.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9. 지방병무관서의 장
10. 교육감 또는 교육장
11. 지방의회 의장
12. 지방소방관서의 장
13. 지역 재향군인회장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 ⑦ 생략

소관 실·과		안전재난과
입 안 자	과 장	류 형 욱
	담 당	이 정 규
	담 당 자	강 영 택 (480-6740)